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9가합5539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진구, 정진호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김상우, 임민희, 주성민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201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2014. 1. 29.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43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은 3심까지 거쳐서 2018. 10. 10. 그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E)는 원고들에게 각 980,073,389원 및 그중 908,228,537원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와 E의 아파트 매도와 매수

1) E은 2014. 2. 12.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고, 2014. 2. 28. 피고와 함께 F에게 피고가 10분의 1, E이 10분의 9 지분으로 공유하던 서울 강남구 G 외 2필지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를 22억 원에 매도하고, 2014. 5. 9.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리고 피고와 E은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2014. 9. 22.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J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 중 2백만 원은 계약시, 1,800만 원은 2014. 9. 23.에 각 지급하고, 잔금 10억 원은 2014. 10. 20.에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매도인 L가 잔금일인 2014. 10. 20.부터 1년간 이 사건 J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23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2014. 10. 20. L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여 잔금 9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서, 2014. 10. 20. 피고가 10분의 9 지분, E이 10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원고들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소극재산 5,995,778,420원이 적극재산 4,510,258,500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피고와 이 사건 H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J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 각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피고가 10분의 1에서 10분의 9로 늘어난 반면, E이 10분의 9에서 10분의 1로 줄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E이 2014.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J아파트의 10분의 9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H아파트 매도대금 9억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들과 같은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E의 피고에 대한 9억 원 증여여부

1) 을 제1, 2, 10, 11, 12, 13, 1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년부터 M대학교 N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M대학교 의과대학 및 N병원 병리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과장(교수)인 사실, 피고는 2003. 6. E에게 93,6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E과 이 사건 H아파트를 22억 원에 매도하고서 2014. 2. 21.과 2014. 3. 25. 피고의 지분액 2억 2,000만 원과 E과 이사갈 O아파트의 전세 계약금 5,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9. 22. E과 L로부터 이 사건 J아파트를 각 공유지분 9/10, 1/10로 하여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L에게 2014. 9. 22.과 2014. 9. 23.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고, 2014. 9. 26. E으로부터 E의 부담액 1억 200만 원과 4,8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서 자신의 돈과 합하여 2014. 10. 20. L에게 잔금 10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9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J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E의 부담액 외에는 4,8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가 O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E이 피고에게 9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4,800만 원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2014. 당시 약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E은 2014. 6. 25.부터 2015. 6. 26.까지 당시 위 은행에 530,000,000원의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4,800만 원은 그 1% 정도에 불과하고, 위 4,800만 원은 피고와 E이 지금도 함께 사는 집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도 2003. 6. E에게 93,6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와 E의 부부 관계, 경제적 형편, E 재산에서 위 4,8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용목적, 피고의 직업과 소득액, 근무기간 등과 E의 2014. 당시 적극재산에 관한 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외의 다른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J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이재욱, 판사 전훈자